

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46호
------------	-------

제 출 일 : 2003. 1. 14.
제 출 자 : 예산군수

□ 개정이유

-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했던 보훈단체사무실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후손에게 호국 및 충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읍 예산리 148-1번지로 이전하였기 예산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조례명중 “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”로 함(안 조례명)
- “예산군장애인복지관등”을 “예산군장애인복지관”으로 함(안 제1조)

□ 참고사항

- 2002년 7월 보훈회관 이전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중 “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”을 “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.

제4조제6호 중 “장애인등의”를 “장애인의”로 한다.

제9호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이용자의 범위)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장애인과 보훈대상자의”를 “장애인의”로 한다.

[별표1] 복지관 이용료 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조례명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장애인"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, 보훈대상자라 하면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업무 및 기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5.(생략) 6.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사항 7.~8.(생략) 9.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10.(생략) <p>제5조(이용자의 범위)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로 하며,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.</p> <p>제11조(수탁자의 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	<p><u>조례명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장애인"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업무 및 기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5.(현행과 같음) 6.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.~8.(현행과 같음) 9. 삭제 10.(현행과 같음) <p>제5조(이용자의 범위)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우선한다.</p> <p>제11조(수탁자의 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【별표 1】

복지관이용료 (조례 제10조와 관련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	일 반	
물리치료 (언어·심리)	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		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금액	
직업훈련	1인 1개월	무 료	20,000원	
기 타 (조기교육등)		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